



군보는 공문으로써의 효력을 갖는다.

# 군 보

제428호 2012. 7. 5(목) 호외

선 람	기 관 의 장

## 조 려

○ 진안군 조례 제1972호 (진안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1

## 규 칙

○ 진안군 규칙 제1058호 (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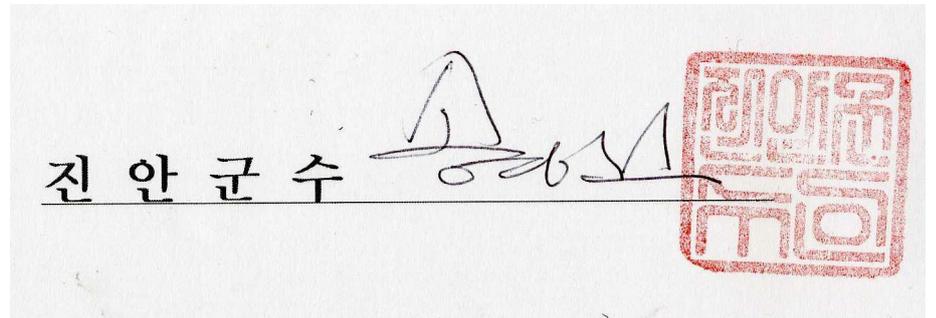
## 고 시

○ 진안군 고시 제2012-41호 (진안 군계획시설(도로:소로3-20호선) 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15

회 말										
--------	--	--	--	--	--	--	--	--	--	--

발행 진 안 군 (편집 행정지원과(063)430-2838

진안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7월 5일

진안군 조례 제1972호

## 진안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계 법령에 따라 진안군의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계 법령"이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 여성의 경제활동지원 등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정책"이란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

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정책을 말한다.

3. "여성단체"란 법 제3조제2호 및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여성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진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장 여성정책

제5조(여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7조 및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른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정책의 여론 및 실태조사 등) 군수는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론 및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군에서 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한다.

제7조(여성주간 행사 등) 군수는 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여성주간 기념행사 등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종 행사를 실시하거나 행사 주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군정참여의 확대)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각종 위원회 등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적극 확대하여야 한다.

제9조(여성인적자원의 개발 지원 등) ① 군수는 법 제21조의2에 따라 여성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의 능력 향상을 통하여 양성이 동등하게 취업과 창업 등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여성권익 및 복지증진) ① 군수는 저소득 모자가정, 미혼모, 가출여성, 결혼이주여성 등 보호대상 여성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들에 대한 선도·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가해자의 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여성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남녀평등 추진) ① 군수는 가정·학교·사회교육 등에서 남녀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 및 교육 훈련 등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여성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군수는 법 제28조의2에 따라 여성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시행하거나 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거동불편자를 위한 목욕지원사업 및 이동 빨래차 운영
3. 사회적 취약계층 밑반찬 지원사업
4. 그 밖의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활동

제13조(단체의 지원) 군수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및 단체(법 제3조의제2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와 그 밖에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장 여성발전위원회

제14조(설치) 군수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 참여확대 및 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진안군여성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여성지위향상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군 여성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여성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5. 여성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자문·심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여성정책 추진관련 주요사항이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기획재정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여성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여성관련 기관·사회단체 대표

제17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

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을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여성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여성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 한다.

제2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3. 위원이 심의 및 자문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장 여성발전기금

제25조(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에  
진안군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처리한다.

제26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27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 등에 대  
한 지원에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 지원
3.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향상을 위한 활동
4. 요보호여성의 복지증진 및 발생예방을 위한 사업
5. 여성의 사회교육 국내외 연수 및 교류사업
6. 그 밖에 남녀평등 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28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  
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지원단체 선정 및 기금 지원금액 결정
5. 지원신청자의 1년간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기부담 능력 여부
6. 그 밖의 기금에 관한 필요한 사항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30조(기금운용의 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진안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1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총괄기금관리관,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1.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 주관부서장
2. 기금운용관 : 여성업무 주관부서장
3. 기금출납원 : 여성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진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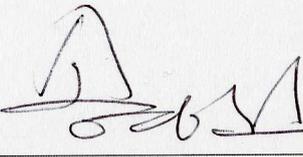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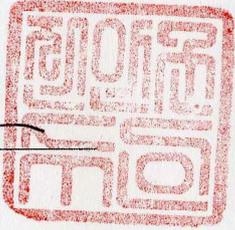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안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 및 조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진안군 여성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진 안 군 수  

2012년 7월 5일

진안군 규칙 제1058호

### 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

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한다.

제3조 제2항 중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또는 5급 상당 별정직”을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또는 5급 상당 별정직”으로 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사무과장) ①사무과장은 <u>지방행정사무관</u>으로 보한다.</p>	<p>제2조(사무과장) ①----- -----<u>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 농업사무관</u>-----.</p>
<p>제3조(전문위원) ②전문위원은 <u>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 관·지방녹지사사무관</u> 또는 5급 상 당 별정직과 지방행정주사·지방 농업주사 또는 6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p>	<p>제3조(전문위원) ②----- -----<u>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 무관</u>----- ----- ----- -----.</p>

## 진안 군계획시설(도로:소로3-20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진안 군계획시설(도로:소로3-20호선)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진안군청 건설교통과(☎430-243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진 안 군 수  
2012년 07월 일

### 1. 사업의 종류 및 내용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위치	면적 또는 규모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비고
도시계획도로(소로3-20호선) 확·포장공사	진안읍 군하리 293-4번지일원	L=113m B=6m	158	2012. 7 ~ 2013.12	

###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진안군수
- 주소 :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 (군하리 97-4)

### 3. 사업시행기간 : 인가일 ~ 2013. 12. 31

### 4. 관계도서 : 계획실용 생략

###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 붙임

<붙임>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m <sup>2</sup> )		지분	소유자		소유권의 권리자		비고
	읍	리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권리내용	
계					14,696	705		-				
1	진안	군하	293-4	도	69	2		진안군				
2	"	"	455-1	도	10,024	239		국(국토해양부)				
3	"	"	293-1	답	4,454	315	1/3	김영선	서울 종로구 효자동 33-2			
							1/3	김영호	서울 종로구 효자동 33-2			
							1/3	김선경	서울 종로구 효자동 33-2			
4	"	"	293-3	도	149	149		진안군				